

부산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564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세

피고, 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명

담당변호사 이예건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2. 14.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4182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471,945,3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427,441,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원고 주식회사 A’를 ‘원고 A’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 원고 A는 2018. 12. 12.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50198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7. 원고 A의 기성고율을 43.12%로 인정하여 E은 원고 A에 미지급 공사대금 401,7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 및 E이 부산고등법원 2021나52870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2021. 12. 8.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2018. 12. 17.'을 '2018. 12. 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 이에 원고 A가 부산고등법원 2021나52870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12. 8. '피고 C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였고,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C로 건축주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E의 피고 C에 대한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원고 A의 선행소송'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의 '2019. 2. 13.'을 '2019. 1. 2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라. 피고 D'을 '라. 피고 D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1행의 '피고 D'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의 [인정근거] 부분 중 '17 내지 21호증'을 '17 내지 21, 24, 3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각 기재'를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6행, 제8쪽 제8행의 '원고들의'를 '피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각주2)의 내용 중 '한편 원고들은 2021. 7. 8. 제2회 변론기일에서'를 '한편 원고들은 제1심의 2021. 7. 8. 제3회 변론기일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의 '건축주변경'을 '건축주명의변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의 '위 가처분결정 위반하여'를 '위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 부분을 '○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제1차 가처분결정에 따른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선행소송에서 제1차 건축주명의변경이 불법행위 내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B의 제1차 가처분결정에 따른 본안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0792) 또한 원고 B이 그 소를 취하여 종결되었으며, 달리 제1차 건축주명의변경을 사해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제1차 건축주명의변경이 원고들의 각 제1차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7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기, 판사 임상민, 판사 김영환